

의안번호	제928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발의자	박재주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박재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28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 박재주, 최정훈, 안지윤,
김국기,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박용규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발굴·조사·연구하고, 체계적인 수집·보존 활동을 통해 향토 자료의 학술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향토사 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향토사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향토사 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향토사 연구자료 수집 방법 및 교육·홍보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나. 관련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향토사 연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인물, 지리, 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를 말한다.
2. “향토지”란 도의 향토사 및 지리와 문화, 민속 등을 조사·연구하여 기록한 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 사료의 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향토사 진흥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향토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사 연구 및 향토 사료의 수집·보존
2. 향토지 발간·배포 및 홍보
3.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자료 등 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자료수집) ① 연구자료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 외에도 위탁, 사본 수집, 구술 채록 등의 방법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교육 및 자료 제공 등에 도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 도지사는 효율적인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도 내 시·군, 향토사학자,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발굴·조사·연구하고, 체계적인 수집·보존 활동을 통해 향토 자료의 학술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 등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5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 ~ 2029년까지 5년으로 하며, 2025년 추진사업 기준으로 향토사 연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연간 46,800천원, 향후 5년간 234,000천원 소요
 - 충북향토사연구 총서 발간 18,000천원
 - 충북향토사 학술대회 개최 28,8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50%), 시군비(5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출	46,800	46,800	46,800	46,800	46,800	234,000
충북향토문화 학술대회 개최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충북향토연구 학술총서 발간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144,000
재원 조달	46,800	46,800	46,800	46,800	46,800	234,000
도비	23,400	23,400	23,400	23,400	23,400	117,000
시군비	23,400	23,400	23,400	23,400	23,400	117,000